『태백시 공고 제2026-484호』

철암 육성2차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태백시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6. 4. 17.(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 시 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안내)** 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1 주택단지 개요 및 모집대상 주택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동태백로 465	1개동 40호	'99.4.16.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본 모집공고는 태백시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계약 포기자 및 해약 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2. 공급주택

단지명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호수	공실	모집대상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철암육성2차	49.82㎡	7.005㎡	56.825㎡	개별 기름난방	40	2	2세대 (예비입주 12세대)

3.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4. 1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4. 17.)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단, 일반(기존)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밖에 공급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신청자격 세부내역

순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5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가 교부된 경우)**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소득 · 자산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소득	• **해당 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3,813,363원	5,866,270원	8,168,429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 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th></tr>
<tr><td rowspan="2">자산</td><td>총자산
가액</td><td>•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24,500만원 이하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출산 자녀 수(태아 포함)에 따른 자산기준</th></tr>
<tr><th>없음 (기준)</th><th>1인 (+10%p)</th><th>2인 이상 (+20%p)</th></tr>
<tr><td>총자산가액</td><td>245,000,000원 이하</td><td>269,500,000원 이하</td><td>294,000,000원 이하</td></tr>
<tr><td>자동차가액</td><td>45,420,000원 이하</td><td>49,962,000원 이하</td><td>54,504,000원 이하</td></tr>
</table>
※ 출산 자녀 수는 '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공고일 기준 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 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인 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자녀 2인 이상은 20%p)를 자산 보유 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td></tr>
<tr><td>자동차
가액</td><td>•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가액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가액 가산(자산기준 금액 표 참고)</td></tr>
</table>

※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자료임(**소득 및 자산가액은 해당 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가액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가액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표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점수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단, 제4호와 제5호의 가점 합계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대상지역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배점항목표(국토교통부훈령「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2)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1.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해당 사업대상지역인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2. 부양가족(신청자 본인 제외)의 수[1]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추가 가점)「민법」상 미성년 자녀의 수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미성년 자녀 2명 - 미성년 자녀 1명	3점 2점 1점
- (추가 가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여부 (단,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1점
- (추가 가점) 중증장애인 여부 (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함)	- 중증장애인	1점
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교부 여부	국토교통부훈령「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별지5]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가 교부된 경우	2점
4.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으로 산정하며, 부양의무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인정하지 않음 * 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가. 80% 이상 나. 65% 이상 80% 미만 다. 50% 이상 65% 미만 라. 30% 이상 50% 미만	5점 4점 3점 2점

1) 부양가족 범위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 대상) 전원(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단,「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가능(자격 및 자산, 소득기준 만족시)**

■ 임대조건

공급형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계	계약금	잔금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49.82㎡	16,800,000	840,000	15,960,000	84,600~98,700	(+)	4,200,000	21,000,000	63,020~73,500
					(-)	4,200,000	12,600,000	110,220~128,410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및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태백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신청 및 입주절차

입주 희망자	⇨	신청접수 및 입주대상자 선정 태백시청 건축과	⇨	임대차계약 태백시↔입주대상자	⇨	잔금 납부후 입주

5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1, 2순위	**1차: 2026. 05. 11.(월) ~ 2026. 5. 22.(금)** **2차: 2026. 06. 15.(월) ~ 2026. 6. 26.(금)**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태백시청 건축과

■ 신청서류

- **공고일(2026. 4. 1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기본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시영임대주택 입주·갱신 신청서	• 신청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신청자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작성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첨부된 동의서 양식 내용 확인 후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유의사항)** **동의서 미제출 시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신청자 작성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확인서(각서)	• 신청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신청자 작성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유의사항)**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②**외국인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 거주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발급방법)**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유의사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필요**(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	행정 복지 센터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시 : 세대 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행정 복지 센터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 복지 센터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 자산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관계증명서)**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 자산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입양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제출**	병원 행정 복지 센터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 자산기준 산정 시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는 경우 제출** ※ 단,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제출 생략	출입국 관리 사무소

■ [추가 자격 입증서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주거지원 시급가구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자** : 국토교통부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별지5]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 가능	행정복지센터 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작성
저소득 고령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건강보험공단

■ **[추가 자격 입증서류] 장애인(월평균소득 70% 이하, 100% 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첨부된 동의서 양식 내용 확인 후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유의사항)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신청자 작성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의 장애인등록증도 신청자 자격 입증서류로 인정	행정복지센터

■ **배점항목표 입증서류(동일 순위 내 경합 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

구분	제출서류
추가 제출서류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입증 서류(세대원 포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가 교부된 자> • 국토교통부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별지5]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로 기제출한 경우 제출 불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 가능 **※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로 기제출한 경우 제출 불요**

6 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 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 수준, 자산 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입주자 선정	•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로의 선정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태백시청 건축과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계약안내문 미수령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구분	유의사항
입주 자격	•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명단 소진 전까지 유지되며, 올해 계약 안내를 받지 못한 잔여 대기자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이 경우 이월된 잔여대기자는 이후 모집된 예비입주자에 우선합니다. • 신청인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며, 우리시는 계약 시 입주자격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재계약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임대 조건	• 모집공고 일정과 관계없이 차후 계약 안내된 시점에 산정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합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 입주 후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1회 한한 계약) 종료후 퇴거하셔야 합니다.
동호지정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 가능한 주택이 확보되는대로 기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주택 동호지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공가 발생 후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집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임차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이하의 자녀(임차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입주자가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전세형 및 분양전환형 제외)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는 다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으면 가장 후순위 예비입주자로 등록되며, 변경대상 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매입임대주택 입주 이후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에 거주중인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 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 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7 당첨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 발표

- **예비당첨발표 : 1차: 2026. 7. 1.(수) 14:00 이후(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차: 2026. 8. 3.(월) 14:00 이후(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주택여부 조회 기간: 2개월 이상 소요**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태백시청 홈페이지(**www.taebaek.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태백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알림마당 → 공고/고시)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시의 안내에 따라 1개월이내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태백시청 건축과 주거복지팀(033-550-3086)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시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주택의 동호는 순번에 의해 배정**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 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주택의 범위

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②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일

①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②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의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태백시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태백시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 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 5. 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구분		산정방법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국토부 주택전산망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의 시행(2025.10.13)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태백시 시영임대주택 □입주 □갱신 신청서

1. 공동주택명	목련영구임대주택( )	타워빌국민임대주택( )	육성2차임대주택( )	
2. 전용면적	39㎡( )	49㎡( )	56㎡( )	59㎡이상( )
3. 신청인 성명		4. 생년월일	남 □ 여 □	
5. 연락처	집		휴대전화	
6. 세대원수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6. 주소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며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태백시 시영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

※ 첨부서류
① 주민등록 (등·초본) 각 1통(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재)
② 입주대상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 확인서(각서)
⑤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절 취 선----------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자: 서명) ( )아파트 입주자 또는 입주대기자로 접수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월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 부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국토교통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장 및「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사회보장정보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태백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임차인(입주대상자 포함, 이하 같다.)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주소,거주시작일,신청인과의 관계)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 정보
소득	□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내역
자산	□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기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계층확인)증명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접수일로부터 5년

2. 본인은 위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수탁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 관리,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임차인 선정·계약 및 입주 정보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접수일로부터 5년

3. 본인은 위 1~2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4. 본인은 위 1~3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태백시가 본인(공급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 모집공고문 및 안내문 등을 통해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확인 후 전원(해당세대) 서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	본인			-		
	-				-		
	-				-		
	-				-		

※ 14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0 . . .

태백시장 귀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2] (서명 또는 인)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호 서식]

확 인 서(각서)

주택의 표시 : _____임대아파트 _____동 _____호

본인이 위 표시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위배할 시는 해약 및 자진 퇴거는 물론 관계법령에 따른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현재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확인 결과 주택소유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 또는 주택공급 계약의 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 불법전매 또는 전대(일부 전대포함)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3. 전매, 전대 등 불법 입주 방지를 위한 입주자 실태조사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4.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유지 및 관리의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임대인의 노후시설교체 및 수리 공사 시 적극 협조하겠으며, 비협조로 인한 책임 및 갱신 계약 제외 등에 동의하겠습니다.
6. 시영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계약 해지신청 시, 임대주택 시설물의 훼손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비용 전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 후 수령하겠습니다.
7. 본인이 입주 부적격자임을 정부나 해당기관이 태백시에 통보한 경우, 태백시의 계약해지 및 퇴거요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태백시가 정한 기간 내에 자진 퇴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위 임 장

※ 색상이 어두운 면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대리인 (수임인)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위 임 내 역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타워빌, 장성목련, 철암육성)아파트 (입주, 갱신, 해지)신청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인 (인)

붙임 1. 인감증명서(수임인 본인발급분) 1부
2. 수임인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 각 1부.